

제397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5월18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2년도 주택도시금융융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1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
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
4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
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
4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
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
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
4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
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4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 4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11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11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11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	11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	11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	11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	11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	11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11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11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11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11
1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11
1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842)	11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	12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	12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	12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12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12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12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12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12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12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12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12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 ..	12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 ..	12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	12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	12

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	12
4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	12
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	12
4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	12
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	12
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	12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	12
4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	12
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	12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12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	12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12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	12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	12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	12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	12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	12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60.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

(19시29분 개의)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조금 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논의한 다음에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

(19시30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성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8일 오늘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증액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지원 등을 위하여 총 247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민 주택 안정 등을 위하여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863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1612억 원, 총 247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 등을 매달 말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하였고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주문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성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재 위원님.

○허영 위원 이번 SOC 삭감 예산에 대해서, 원래 삭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대의견 단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집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에 대한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무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호남 말고 강원도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강원도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어떤 주문이 있습니까? 물론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것은 삭감을 전제로 한 부대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집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부대의견에 그 부분들을 넣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희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위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SOC 사업비 삭감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예결소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주에서 ‘전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주에 내려가서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 위원회에서는 SOC 사업 전남 것 59% 삭감하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것 같아요.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게 장관님하고 당정 협의에서 전부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대의견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제 생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어떤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이전 보상예산 확보 등 추진 지연 원인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올해 안에 사업 추진 지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구체적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야-화태 국토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달아서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하튼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지역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희재 위원**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앞 부분에 말씀드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5월 13일 장관 임명을 받은 후에 당정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희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보도로 봤습니다.

○**김희재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제도 대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확인해 보고 예산심사 하지요, 하지 말고.

○**위원장 李憲昇**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윤덕 위원** 전주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확인할 게 많으시니까 오늘 예산에서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게 해요, 확인 다 한 다음에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다…… 버스는 떠나 버린 다음에 나중에 확인되면 뭐합니까?

○**위원장 李憲昇** 이것은 제 독단대로 할 게 아니고 여야 간사님들 의견을 나누세요, 오늘 하실지 안 하실지.

○**김윤덕 위원** 장관님이 좀 책임성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기사를 지금 막 봤기에, 말씀 주셔서 지금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지금 기사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만 김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지요.

○**박상혁 위원** 정회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李憲昇**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아니……

○**박상혁 위원** 정회를 해야지요, 뭐. 아니, 한쪽에서는 예산 폭탄 한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게 당정이, 제대로 여당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세요.

지금 추경 심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먼저 김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장관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허영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김희재 위원님, 둘 다 정리해 주시든지 그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김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당정 협의되거나 의견 교환이 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됨이 없이 균형 있게 그리고 상식에 맞게 예산 및 모든 앞으로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김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허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희재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허영 위원** 예, 제가 먼저……

○**위원장 李憲昇** 허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허영 위원** 부대의견으로 사업명을 구체화해서 증액 의견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많은 SOC 예산이 삭감이 됐고 어제 말씀 드렸지만 강원도의 SOC 예산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그 SOC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을 전화 한 통화로 삭감을 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이광재 후보의 핵심 성과이고 공약이고 추진인 겁니다. 그 예산을 받을 뚝 잘라

가지고 협의 지원과 보상 지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견 명확한 예산 삭감을 통한 선거 개입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추경을 통한 그런 선거 개입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래 놓고 TV 토론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상대 후보가.

○위원장 **李憲昇** 허영 위원, 발언 다 하셨습니까?

○허영 위원 아니요.

여하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이후로 반영 돼서 2023년 예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서도 보상 지원과 협의 지원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지, 이게 지자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기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지연이 일어나서 이 삭감에 이르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 예산 반영하기 전에도 우리 본 위원과 국토 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재 위원님.

○**김희재 위원** 장관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전혀 사전 협의된 것도 없고 그 내용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전남에서만 그런 얘기 하신 줄 알았더니 전북에서 또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그 예산이 어디 많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해서 추경안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주머니 차고 있는 겁니까? 무슨 예산을 어떻게 폭탄처럼 투하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더구나 가장 민감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얘기하는 저런 사업이라든지 우리 전남의 이런 사업들, 지금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이정현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게 불가피하게 정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부

대의견에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명칭을 집어넣어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 남면-정선 국도건설, 태백-미로 국도건설,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여주-원주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등)에 대해 2023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의 편성 이전, 보상 예산 확보 등 추진 지연 원인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올해 안에 사업 추진 지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재 위원께서 읽어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희재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대의견은 정말 합리적인 제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경호 기재부장관을 제가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국토위의 SOC 예산 등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의도적인 세출 구조조정은 전혀 아니고 보상 등 지연에 따른 그런 건데 내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지요.

○**송언석 위원** 예, 짧게.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국도하고 전철 노선이 감액을 해도 된다는 또는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부 측으로 하여금 왜 지연이 되었는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될까요?

○위원장 **李憲昇** 지금요?

○**송언석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다 그것을 했는데 또……

○송언석 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됨으로써 1조 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차보전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혹은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이차보전이 어찌 되었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아마 나온 게, 보완장치로 나온 게 민간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고 양해각서가 갖고 있는 효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1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소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금융시장이 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이차보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시하셨고 또 시중은행 대출이 기금 대출에 대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리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걸 위해서 금융기관과 MOU를 해서,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대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마련한 대출 조건에 차질이 없이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필요한 MOU를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 연준에서 어찌 됐건 시중금리 인상은 예견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들 우려가 큰데요. 이에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지난번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회의 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님, 앞으로 이 방식으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도 직접 대출도 있고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비중이 한 반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계속 이제는 현재와 같이 반반 해서 직접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것은 기금의 수지라든지, 앞으로 기금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또 재정지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라든지 또 기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비율을 유지해 가면서 대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그 방식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새 정부를 통해서 방향을 정할 텐데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도 좋으시고 차관님도 좋으시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까지도 두 가지 방법을 다 혼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비중에 대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반반 정도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금리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출과 관련되는 대출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적절한 비율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다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상황을 봐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자꾸 들려서,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임기응변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하겠다,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서민 주거복지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원희룡 장관님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희재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제가 30초만……

○위원장 李憲昇 김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재 위원 차관님, 아까 예산소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 올해 삭감되는 1조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1조 원을 반영해서 2조 이상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가 직접 대출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아니요, 여기 삭감한 1조를 내년에 당연히 추가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1조에서 2조 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재 위원 그 말씀을 박상혁 위원님한테 드리고 앞으로 그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직접 대출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금 상황을 봐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소위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 달라요. 좀 전에 소위에서 얘기한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 텐데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서민 주거복지라든지 정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는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똑같이 서민들 주거, 주택자금 지원하

는 데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줄어든 예산만큼은 내년도 기금 연계회에 더 늘어난 만큼 더 늘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의문 사항이 생겨서 질문하겠는데요. 1조 원을 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던 것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이차를 보전해 주려면 보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이차보전 예산으로 이번에 200억 원을 더 예산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1조 원 직접 대출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200억 원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지요?

○위원장 李憲昇 말씀하세요.

○송언석 위원 장관님한테……

(웃음소리)

○위원장 李憲昇 빨리 합시다. 말씀하세요.

○송언석 위원 질의하려는데 왜 웃고 그러시고……

장관님한테 자료 요구도 하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 예산을 감액할 때는 다 감액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든 철도든 예산은 책정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깁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생긴 경우에 노선별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때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특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로하고 철도만 나와 있는데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으로 하여금 감액한 그 노선별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자료를 본 의원실에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어 가지고 감액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철도 예산 같은 경우에 경북이 1100억으로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사회간접자본 감액분들은 모두 예산 책정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지연 사유 또는 장애 요인이 발생해서 연내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로 된 것입니다.

○송언석 위원 장관님, 제가 가진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요.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이미 제출했었고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예산소위에 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산소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소위에는 장관님 안 들어가시니까 차관님과 실무 공무원들 조금 더 열심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적인 그런 의도 관계없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체회의까지 나왔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각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 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대의견에 김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라는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이 이어지는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현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장님, 박성민 예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은 이번 추경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1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53)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40)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9)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
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
4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0417)
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3)
4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0)
4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3)
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8)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
4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
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0)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8)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시15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웅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웅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조웅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총 3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 의결

6건, 대안반영 폐기 20건 등 총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강준현 의원과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을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원으로 하여금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 면적이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 심상정 의원, 천준호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자가 대학교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등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계약'을 '사용허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청이 조성·취득한 시설물 중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반환부지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상임이사의 정원을 1명으로 조정하며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송석준 의원, 조오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밀도로지도를 심사할 때에는 보안에 관한 사항만 심사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민원 접수 사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명의 심의·결정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교홍 의원, 김희국 의원, 박상혁 의원 및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입찰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도 조정 및 재정에 포함하는 등 내용입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과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 대표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건설업자 등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이 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문정복 의원, 조웅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을 위한 지역적 범위를 현행 대도시권 외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하여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모든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

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협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문진석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점용료 감면사유에 사회재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산업의 국제 협력 등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양도·양수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물류단지 예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은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 정동만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웅천 소위원장님과 송석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에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5조(정관)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사업)부터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감독)부터 제26조(과태료)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부칙 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조웅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2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운영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복도시법과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60.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690)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시35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축예술진흥법안은 건축분야에서 문화적·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을 별도로 구분하여 ‘건축예술’이라 정의하여 건축예술을 진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예술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할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운영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상충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제정안에서 건축예술 진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현행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입법의 소지가 크며 건축은 예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관련 위원회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질의를 별도로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끝까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조웅천 감사님하고 송석준 감사님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 준 현	김 교 홍	김 상 훈	김 윤 덕
김 회 재	문 정 복	문 진 석	박 상 혁
박 성 민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신 동 근	이 현 승	장 경 태	정 동 만
조 웅 천	천 준 호	하 영 제	한 준 호
허 영	홍 기 원		

○청가 위원(4인)

김 학 용	박 영 순	심 상 정	조 오 섭
-------	-------	-------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시	억
전 문 위 원	이	지	민
입 법 심 의 관	유	인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	관	원	회	룡
제 1 차 관	이	원	재	
제 2 차 관	어	명	소	
기획조정실장	하	동	수	
국토도시실장	김	홍	진	
주택토지실장	김	수	상	
건설정책국장	권	혁	진	

도 로 국 장	이	윤	상
철 도 국 장	강	희	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 장	이	상	래
기획조정관	김	한	수
새만금개발청장	김	규	현